

## 학생 안전관리 규정

**제 1 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상명대학교 대학본부 및 학생회 등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각종 학생단체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,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 조 (정의)** ① ‘대학본부’ 라 함은 대학본부, 각 행정부서, 각 단과대학, 각 학부(과, 전공)를 말한다.

② ‘학생회’란 본 대학 소속 총학생회, 대의원회, 각 단과대학학생회, 각 학부(과, 전공)학생회, 동아리, 단과대학동아리, 외국인유학생자치회 등 우리 대학이 승인한 학생단체를 말한다

③ ‘학생단체행사’란 대학본부 및 학생회 등이 주관하여 교내외에서 다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는 각종 행사를 말한다.

**제 3 조 (안전관리책임자)** 우리 대학의 학생단체행사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교학부총장이 되며, 안전관리 분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.

1. 대학본부 주관: 총무처장
2. 총학생회, 대의원회 주관 : 학생처장
3. 단과대학학생회 주관 : 각 단과대학장
4. 학부(과, 전공)학생회 주관 : 각 학부(과, 전공)장
5. 동아리 주관: 동아리 지도교수
6. 외국인유학생자치회 주관 : 대외협력처장
7. 그 밖에 학생단체행사 : 각 행정부서장 및 각 단과대학장

**제 4 조 (안전관리기본계획)** ① 학생처장은 학생단체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안전관리 분임책임자는 이를 숙지하고 학생단체행사 시 구성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
② 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학생단체행사 전·중·후 안전관리 방안
2. 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 방안 및 연락망
3. 음주사고·추락사고·화재사고 및 그밖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4. 행사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사항

**제 5 조 (행사의 신청 및 승인)** 대학본부 및 학생회 등이 교내외에서 학생단체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 개최 7일 전에 각 소관 안전관리 분임책임자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 6 조 (불허 및 취소 사유)** 안전관리 분임책임자는 학생단체행사 진행 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이를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. 또한 행사 진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, 즉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**제 7 조 (사고조사 및 보고)** ① 안전관리 분임책임자는 각종 학생단체행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, 즉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안전관리 분임책임자는 사고수습 후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,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 8 조 (사고대책위원회 구성)** ① 각종 학생단체행사에서 안전관리 분임책임자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총장의 지시에 따라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사고대책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학부총장, 학생처장, 총무처장, 안전관리 분임책임자 및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 부터 시행 한다.